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65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 의 자 : 채현일 · 한병도 · 이해식
이재강 · 한정애 · 문진석
이광희 · 김남근 · 이상식
조승래 · 장철민 · 김성희
양부남 · 최혁진 · 신정훈
박범계 · 조인철 의원
(17인)

제안이유

최근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통신·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조직화·국제화되고 있음. 그리고 보이스피싱 외에도 연애빙자사기, 낚품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범죄유형과 범행수법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수 국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대상으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연애빙자사기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변종 사기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아울러, 전화 외에도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사기범죄에 이용

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청에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이하 ‘다중피해사기’라 함) 및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다중피해사기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다중피해사기 방지, 다중피해사기 이용의심계좌에 대한 일시정지 등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수사기관의 장은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

산주소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입·출금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피해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이하 “다중피해사기”라 한다)”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란 다중피해사기를 야기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보전, 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표시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위반하여 광고·유인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품이나 영업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광고·유인하는 행위

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 또는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라.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타인 또는 허무인을 사칭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정보·상담 등을 제공할 것으로 가장하면서 인터넷주소 등으로 접속을 유인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 사기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

3. “다중피해사기 관계기관”이란 다중피해사기의 방지, 수사 및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다중피해사기피해자”란 다중피해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외국사기대응기구”란 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수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기구를 말한다.

6.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란 다중피해사기로 인하여 다중피해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다중피해사기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다중피해사기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7.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8.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9.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13.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말한다.
14. “금융투자상품 및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을 말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가상자산의 거래 및 투자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다중피해사기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중피해사기 및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이하 “다중피해사기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제보 접수 및 처리
2. 다중피해사기 발생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이 법에 따른 방지조치에 필요한 정보제공
3. 다중피해사기 관계기관 및 외국 사기대응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4. 그 밖에 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대응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전담부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등) ①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이하 “이용중지”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특정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다수의 신고·제보가 접수되거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등으로 해당 전화번호를 통한 추가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다중피해사기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수·발신 기능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 이용자에게 긴급차단 요청 사실, 사유,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긴급차단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긴급차단은 최대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④ 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전화번호·원발신번호·고유식별번호·가입일자·착신전환 전화번호·하위재판매사업자명 등의 자료(이하 “관련 자료”라 한다)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

조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차단된 전화번호의 이용자는 경찰청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보통신망 방지조치 등) ①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관련 신고·제보 등을 통해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정보통신 서비스를 확인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다중피해사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중피해사기 예방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중지 등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차단조치 등을 받은 이용자는 경찰청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중피해사기 이용의심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경찰청장은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다수의 신고·제보가 접수되거나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특정 계좌가 다중피해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하여 당해 계좌에 대한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30일 이내의 기간과 구체적인 임시조치 내용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고 해당 계좌의 이용자(이하 “계좌 명의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명의인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시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계좌의 명의인은 경찰청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결과 해당 계좌가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로 추정되지 않고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임시조치 종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임시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임시조치 종료를 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계좌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대신하여 공시하는 사유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항

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제2항에 따른 통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당 계좌를 대상으로 지급정지를 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된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인
2.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계좌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다중피해사기피해자 또는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전받은 자금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인출되어 계좌에 남은 잔액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급정지 및 이의신청 절차와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중피해사기 이용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 ①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다중피해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가 입금된 가상자산주소를 확인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하 “입·출금 차단”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지체없이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차단하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이용자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출금 차단에 관한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입·출금이 차단된 이용자

2. 제1항에 따라 입·출금 차단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이용자는 자신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한 가상자산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

명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치의 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입·출금 차단 및 이의신청 절차와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벌칙) 제8조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제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